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27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7. 4

고성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7. 5.

다. 상정·의결일자 : 2005. 7. 14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조례로 제정 운영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자문단 기능 규정(안 제2조)

나. 자문단 구성은 민간 전문가로 단장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안 제3조)

다. 임기는 단장, 부단장, 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안 제4조)

라. 자문단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년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가능 (안 제6조)

마. 자문 및 안전점검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에 군수가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등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자문내용을 규정하고
- 안 제3조에 자문단의 구성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10 ~ 20인 이내의 자문단 정수와 전문가의 전문분야를 규정하고
- 안 제4조에 자문단의 임기
- 안 제5조에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 안 제6조에 자문단 회의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관계공무원 의견을 전술할 수 있는 회의 운영방안을 규정하고
- 안 제7조와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자문과 안전점검 의견청취, 상담 실시 결과보고를 하고
- 안 제11조에서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도록 하고
- 안 제12조에서 자문단 사무처리 지원을 위한 간사와 서기를 지정하고
- 안 제13조에서 자문단회의와 참석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4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 조례안의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시행 하는 것이 타당함을 검토보고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 :

- 문 : 제32조의 민간전문가 어떤 사람인가 ?
- 답 : 민간인으로서 재난과 관련된 전문가입니다.
- 문 : 몇 명을 위촉할 것인가 ?
- 답 : 이 조례 시행후 위촉인원 및 대상을 결정할 것 입니다.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